

숙박 약관

제 1 조 (적용 범위)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 조 (숙박계약의 신청)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제 1 숙박 요금에 따름)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3. 미성년자만이 숙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동의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며, 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

제 3 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 요금을 제시하거나 전화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안내하고, 해당 숙박 요금에 근거하여 숙박 요금의 신청을 해, 당 호텔이 승낙했을 경우는, 해당 요금이 그 전후의 기일의 숙박 요금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저렴할 때는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 등의 저렴한 이유의 표시 또는 안내가 없는 한은,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이므로, 숙박 계약은 무효로 하고, 신속하게 그 취지의 통지를 드립니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 일을 넘을 때는 3 일간)의 숙박요금을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4.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5. 제 3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제 4 조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전조 제 3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 3 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 5 조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할 때.

(4)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가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당 호텔이 판단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 년 법률 제 77 호) 제 2 조제 2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조 제 2 조 제 6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함), 폭력단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하,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 대한 전염등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할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8)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9)도도부현이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10)숙박 신청을 한 자가 예약한 방에 대해 전매나 유료로 알선 등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신청을 했을 때.

(11)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과거에 당 호텔과의 사이에, 당 호텔 관계자(임직원, 숙박객 및 거래업자 등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포함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을 때.

(12) 이상에 준해, 당 호텔이,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의 숙박을 인정하는 것을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제 6 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 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 2. 다만, 당 호텔이 제 4 조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10 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1 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당 호텔의 임의의 판단에 의해,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텔의 판단 및 처리에 대해 해당 숙박객은 어떠한 주장도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다.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 대한 전염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할 때.

(5)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져,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6) 천재 재해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 도도부현이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8)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9) 숙박객이 당 호텔 관계자(임직원, 숙박객 및 거래업자 등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포함되지 않음)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야기했을 때.

(10) 이상에 준해, 당 호텔이 숙박 계약의 유지를 인정하는 것을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 8 조 (숙박 등록)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시고, 당 호텔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 호텔이 상당으로 인정한다.

제 9 조 (객실 사용 시간)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숙박 계약 체결 시에 당 호텔이 결정하여 숙박객에게 제시한 사용 개시 시각(체크인 가능 시각 15:00)부터 사용 종료 시각(체크아웃 기한 시각 10:00)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 호텔이 임의로 정하고 숙박객에게 제시하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체크아웃 시각부터 체크아웃일의 1 실 1 박분 숙박 요금

제 10 조 (이용규칙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 11 조 (영업시간)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합니다.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 12 조 (요금 지불)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 1 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엔) 또는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 13 조 (당 호텔의 책임)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약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당 호텔이 본 계약에 근거하여 지는 손해배상채무(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기타 법률상의 책임 중 어느 것인지를 불문한다)의 금액은 당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숙박객이 당호텔에 대하여 지불한 숙박요금 등의 총액(단, 소비세 상당 부분을 제외한다)을 상한으로 한다.

3.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 14 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는 때의 취급)

당 호텔은 당 호텔의 비난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해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 시설을 선회해야 합니다. 단, 숙박객이 걸리는 선을 희망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숙박 시설을 탐험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또한, 객실이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기탁물 등의 취급)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은, 당 호텔이 부보하는 보험 약관에 준거해 손해의 배상을 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 호텔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호텔은 당 호텔이 부보하는 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6 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저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에 건네 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지고 이를 당 호텔이 발견한 경우는,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아 있던 경우는, 원칙 폐기물로서 처리해,

일절의 보관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전 2 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님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처리에 대해서, 당 호텔은 대체로 7 일간 이내에 폐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폐기가 통상의 당 호텔의 청소 업무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비용을 숙박 계약자에게 청구합니다 원칙으로서 발견일을 포함해 당 호텔이 정하는 일정기간 보관하고, 그 후에는 폐기물로서 처리해, 일절의 보관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처분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후일 비용을 청구합니다.

제 17 조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2. 당 호텔 시설내(지정 흡연 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을 위해, 객실내 혹은 시설내에서 흡연(종이 담배·전자 담배·가열식 담배)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는 흡연에 의한 객실 클리닝 대 및 객실 매진 방지의 손해 배상을 별표 제 3 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3. 당 호텔 내의 비품을 숙박자가 파손 혹은 관외로 반출한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배상금을 부과합니다.

4. 객실 내의 욕실에서 헤어 컬러 (모 염색, 표백 등)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탈의소·벽면·마루·타월·침구 등에 오손이 생겼을 경우는, 특별 청소 및 수복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제 18 조 (면책사항)

당 호텔 내외로부터의 컴퓨터 통신(당 호텔의 네트워크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이용에 있어서는, 숙박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기타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숙박객이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본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숙박객에 의한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대해서, 당 호텔이나 제삼자등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 19 조 (본 약관의 변경)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변경 후의 본 약관의 조항에 대해 합의가 있던 것으로 간주해, 개별적으로 숙박객과 합의를 하지 않고 숙박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본 약관의 변경이 숙박객의 일반 이익에 적합할 때

(2) 본 약관의 변경이 숙박 계약을 한 목적에 반하지 않고, 또한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내용의 상당성, 그 외의 변경에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것일 때

2. 당 호텔은 본 약관의 변경을 할 때는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또한 본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의 본 약관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인터넷의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주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숙박 계약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에 따라 후쿠오카 간이 법원 또는 후쿠오카 지방 법원을 가지고 제 1 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하 여백)

별표 제 1 숙박요금의 내역(제 2 조제 1 항 및 제 12 조제 1 항 관계)

고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① 기본 숙박료

(실료(및 실료+ 조식 등의 음식료))

추가요금② 추가음식(①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다)

세금이 소비세

나 숙박세(각 도도부현의 조례에 따름)

다 입탕세(온천지만)

비고 세법이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숙박요금

① 객실 요금 (서비스 요금 포함)

② 음식 및 기타 이용 요금

세금

④소비세

pW숙박세(후쿠오카현) 객실요금(①+ ②) : 1 명/1 박당

20,000 엔 이상 : 500 엔

20,000 엔 미만 : 200 엔

별표 제 2 위약금(제 6 조 제 2 항 관계)

계약 취소 통지일 불박 당일 ~ 4 일 전 5 일 전

위약금 비율 100% 100% ~ 100% 0%

(주)

1. %는 숙박요금(①+ 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단 숙박 플랜 등 별도 판매 가격 규정이 있을 때는 그쪽을 우선합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한 경우도, 상기 「별표 제 2 위약금」에 근거하는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객(15 명 이상)용으로 판매하는 숙박 플랜,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숙박 플랜에 있어서의 숙박 계약 등에서는, 당 호텔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위약금 규정은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이용 규칙

호텔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 호텔의 손님에게는 숙박 약관 제 10 조에 근거해, 이하의 조항을 삼가해 주십시오.

이 규칙에 정해진 사항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숙박의 계속 및 관내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도 및 객실내에서 난방용, 취사용의 화기 및 다리미등의 반입은 삼가해 주십시오.

●가방 등의 대형 쓰레기(한 변의 길이 최장 30 센티미터를 넘는 것)는 가져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체크아웃 시 객실 또는 시설 내에 방치된 경우 처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 안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의 흡연은 삼가해 주십시오.

● 방문객과의 방에서의 면회는 삼가해 주십시오.

●다음에 튀기는 조직, 개인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숙박 및 관내 제 시설의 이용을 거절합니다.

①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및 그 관계자

②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관계자

③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체원 및 그 관계자

④ 폭행, 상해, 협박, 공갈, 폭력적 요구행위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의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⑤ 만취자 등 다른 고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호텔 이용규칙 위반에 대해 당 호텔보다 주의를 받고 즉시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은 자

(1)전①에서⑥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시점 이후, 일체의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2) 전염병 등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는 등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의 숙박은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 및 객실내에서 성고, 방가 또는 번잡한 행위등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거나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복도 및 객실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반입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 동물, 조류 등의 생물 혹은 애완 동물류.

pW 현저하게 다량의 물품.

Pa 현저하게 악취를 발하는 것.

㉡ 화약이나 휘발유 등 발화 혹은 인화하기 쉬운 것.

㉢ 적법하게 소지를 허가되지 않은 철포, 도검류.

●복도 및 객실 내에서 도박이나 풍기·치안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외래자를 객실내에 인입하거나, 객실내의 여러 설비, 제물품 등을 사용시키거나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관내의 여러 설비, 여러 물품을 이동, 반출 또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호텔의 건축물이나 여러 설비에 이물질을 설치하거나, 현상을 변경하거나 하는 가공을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 호텔 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광고물을 배포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음식물의 출전은 삼가해 주십시오.

별표 제3(제17조 제2항 관계)

객실내 흡연에 의한 클리닝 대 1실당 1만엔(부가세 포함)

객실 내 흡연에 의한 객실 판매 비용 객실 판매 일수 × 1만엔 (세금 포함)

시설내 공유부 흡연에 의한 클리닝 대 5만

(주) 객실 매수 일수는 당 호텔의 판단에 의해 실제로 판매를 차감한 일수로
합니다.

단, 상한을 10 일분으로 합니다.